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. 10. 25 선고 2022가단208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단체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10. 25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7. 8.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위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, 2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19. 7. 8. 접수 제45910호의, 제3, 4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19. 7. 8. 접수 제45911호의 각 2019. 7. 8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박진숙

별지